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5. 11.

제안자 : 과학기술정보방
송통신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경과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경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2210869	박충권의원	2025. 6. 16.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 회의(2025.8.26.) 상정 후 제안설 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과학 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2025.11.24.) 상정
	2212743	박충권의원	2025. 9. 5.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6차 전 체회의(2025.11.17.) 상정 후 제안 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 쳐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 원회 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과학 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2025.11.24.) 상정

나.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20

25. 11. 24.)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 11. 24.)는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질병·사망 등 생명 및 정신상·신체상의 손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여 정신상의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피해자의 회복과 사회적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연구주체의 장이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질병·사망 등 생명 및 정신상·신체상의 손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26조제 1항)

법률 제 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상해·사망”을 “부상·질병·사망 등 생명 및 정신상·신체상의 손해”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보험가입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u>상해·사망</u> 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6조(보험가입 등) ① ----- ----- ----- - <u>부상·질병·사망 등 생명 및 정신상·신체상의 손해</u> ----- -----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